별지 제2호

촬영시설 대여 약정서

본인은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를 사용함에 있어 귀 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.

1. 위원회에서 촬영시설 대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촬영시설의 파손 및 기기고장 등 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신청자가 대여(사용)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용 중지 또는 취소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2.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대여조건을 이행한다.
   가. 신청자는 촬영시설을 촬영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.
   나. 신청자는 촬영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.
   다. 사용자는 특수 촬영시(화재, 총격, 연무, 물 등)사전에 운영팀과 반드시 상의 하여야 한다.
   라. 신청자는 촬영시설 사용 중 발생한 제비용을 부담한다.
   마. 촬영시설 사용 시 전기·수도·가스 등의 추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   바. 촬영시설의 사용 후에는 사용 전 상태로 완전복구·정리해야 한다.
   사. 사용자는 본 운영팀의 사전 요청 시 동영상 및 스틸촬영을 허가하여야 한다. 단, 내부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신청자는 대여신청서에 의거 산정한 대여료의 50% 이상을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수납하고 대여료의 잔액 분은 촬영시설 사용개시일 전까지 현금으로 수납한다.

4. 촬영시설 대여 시 신청자의 사유로 사용(촬영)이 중단·연기된 경우 그 사유가 천재지변이 아닐 때는 정상적인 대여사용으로 간주하며 촬영시설의 사용기간 중에 대여일자 및 대여기간의 변경은 절대 불가함에 동의한다.
   (단, 사용 전 취소는 가능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다)

취소요청 시점	반환액 구분
사용계약일 30일 전	전액 반환
사용계약일 29일~15일	50%공제 반환
사용계약일 14일 전	**반환액 없음**

5. 신청자는 대여시설 및 대여물품의 손·망실, 고장, 파손, 인명피해 등의 사고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제반 피해액을 변상(부담)한다.

6. 신청자의 피해변상은 원상회복 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 및 성능으로 대체 변상하며, 원상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.

년 월 일

약정자 : (인)

부산영상위원회 위원장 귀하